

## 한방급여약제 구입 -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제 시행 안내

- 보건복지부에서는 **현지조사 실시 이전에**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.
- 심사평가원에서는 2020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'**한방급여약제 구입 - 청구 불일치**'에 대하여 자율점검제를 실시할 예정인 바,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\* **성실 점검기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, 과징금)이 면제됩니다.**

- 아 래 -

### □ 자율점검제 개요

- (개념)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**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**
- (관련근거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[별표5] 제4호, **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** (고시 제2020-215, 2020.9.24.시행),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 (고시 제 2018-222, 2019.11.1.시행) 등

### □ 항목 선정 배경

-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규모를 비교한 결과 구입금액보다 청구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되고 **한방급여약제 관련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사례(거짓, 증량, 대체 청구 등)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** 자율점검 필요

## [ 관련 근거 ]

- **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함**  
(국민건강보험법 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, 의료법 제22조(진료기록부등))
  
- **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1호, 2020.5.1. 시행)**
  - 제2조(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)
    -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.
    -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.
  - 제3조(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)
    - ① 한방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.
    -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,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,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 할 수 없다.
    -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“기준처방별 가격표”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 한다.
    - ④ **성인(11세 이상)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, 소아(11세 미만)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**
      - 1.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/5
      - 2.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/4
      - 3.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/2
      - 4.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/4
    -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
      - 1. 단미엑스산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,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

※[별표1] 한약제제급여목록표, [별표2]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별가격표

## □ 자율점검 운영 방법 및 절차

- (점검대상) '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'에 관한 사항
- (대상기간) 요양기관별 착오의 개연성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부당내역 확인 시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 대상기간 확대(최대 36개월)
- (제출기한)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(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)
- (점검사항) 한방급여약제 관련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여부
  -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
- (방법 및 절차)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
  -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 면제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 실시



## □ 자율점검 관련 문의처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  - 이경란 팀장 (☎ 033-739-5906), 김소리 과장 (☎ 033-739-5946)
  - 한아름 과장 (☎ 033-739-5933), 최경애 대리 (☎ 033-739-5926)
  - 신문원 대리 (☎ 033-739-5945), 한세진 대리 (☎ 033-739-5942)

첨부 : 자율점검제 안내문 1부.  
자율점검결과서 1부.  
자진신고서 1부.  
자진신고 세부내역 1부. 끝.

## 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

- 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18.9.28., 시행 2018.11.1.)」 및 「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215호, 시행 2020.9.24.)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금번 「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한방 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하였는지,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.

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( )년 ( )월부터 ( )년 ( )월 진료분(기관별 상이)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) 자율점검 방법

#### - [자율점검사항]

- ① 한방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여부 점검
-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

#### - [점검대상기간]

- ① 6개월: 기관별 반기별 청구금액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
- ② 36개월: 착오청구 확인 시 2017.7.~2020.6. (36개월) 진료분 범위내 추가 점검

#### - [제출기한]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#### - [제출서류]

-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  - 자율점검결과서
  - [붙임1]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, 진료비 계산서(영수증, 세부내역서)
  - [붙임2] 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 요청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
  - [붙임3]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
-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
-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#### - [제출방법]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

- \*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
- \*\* (주소)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#### - 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이경란팀장 (☎ 033-739-5906), 김소리과장 (☎ 033-739-5946)  
 한아름과장 (☎ 033-739-5933), 최경애대리 (☎ 033-739-5926)  
 신문원대리 (☎ 033-739-5945), 한세진대리 (☎ 033-739-5942)

### 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

※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연계

## 자 율 점 검 결 과 서

○ 요양(의료급여)기관 명칭(기호):

○ 소재지: (TEL : )

○ 대표자 성명:

○ 면허번호:

○ 점검 결과

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( )  
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  
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인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

제출 서류

1. 착오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
2. 착오청구일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

※ 자율점검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 
정확하고 성실하게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**[작성방법]**

**자진신고 세부내역**

연번	①접수년도	②접수번호	③청구서 일련번호	④명세서 일련번호	⑤보험자 구분	⑥수진자명	⑦생년월일	⑧요양개시일자	⑨기존청구		⑩기타 (실제 시행한 행위)	비고
									청구코드	청구횟수		

**작성방법**

※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기재가 필요한 항목은 추가 작성 등 항목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※ 기재내용

- ① 접수년도: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년도
- ② 접수번호: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 시 부여된 번호
- ③ 청구서일련번호: 전산부 인계일자에 따라 생성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번호
- ④ 명세서일련번호: 수진자별 작성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번호(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통합, 외래의 경우 방문일자별)
- ⑤ 보험자구분: 건강보험, 의료급여, 보훈
- ⑥ 수진자명: 수진자 성명
- ⑦ 생년월일: 수진자 생년월일
- ⑧ 요양개시일자: 진료를 위해 최초 내원한 일자
- ⑨ 기존청구: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 내역
- ⑩ 자진신고: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 내역  
예) A코드를 10회 청구하였으나 실제 B코드를 8회 실시하였을 경우, B코드 8회 기재
- ⑪ 첨부자료: 요양기관 시설·인력·장비 현황, 진료기록부, 검사결과지, 약제구입증빙자료 등